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1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별표 3)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3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주관하는 행사	10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4. 5. (생략)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생략) 나. 기타</p>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u></p> <p>4. 5.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u><신설></u>	<u><신설></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u></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	<u>10</u>
감면대상	감면율(%)								
<u><신설></u>	<u><신설></u>								
감면대상	감면율(%)								
<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	<u>10</u>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할 경우 사용료 수익이 10%(감면율)감면 되므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박 준 현 (02-2133-3832)